

제279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1. 4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4월 20일  
전문위원 최 광 호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22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4월 6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4월 6일

## 2. 개정이유

아동·청소년 보호와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전담 부서를 구축하여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‘교육청소년과’ 를 ‘교육지원과’ 로 명칭 변경 및 사무분장 조정(안 제4조)
- 나. ‘아동청소년과’ 를 신설 및 사무분장 조정(안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협 의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1.3.3.~2021.3.23.) 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: 해당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취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·청소년 보호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담부서를 구축하고자함

### 나. 주요 내용

- “교육청소년과” 를 “교육지원과” 로 명칭 변경(안 제4조제1항)
  -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 중 “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 건전육성” 업무 삭제(안 제4조제2항제5호)
- ※ 행정관리국 변경사항

| 현 행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|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과 명    | 분장사무                    | 과 명   | 분장사무 |
| 행정지원과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지원과 |      |
| 자치행정과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치행정과 |      |
| 협치분권과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치분권과 |      |
| 문화체육과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화체육과 |      |
| 교육청소년과 | 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 건전육성, 평생교육 | 교육지원과 | 평생교육 |
| 민원여권과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민원여권과 |      |

○ 생활복지국 내 “아동청소년과” 신설(안 제7조제1항)

○ 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 조정 및 추가(안 제7조제2항제2호 ~ 안 제7조제2항제3호)

※ 생활복지국 변경사항

| 현 행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|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과 명    | 분장사무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 명            | 분장사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복지정책과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정책과          |   |
| 생활보장과  | -----통합관리,<br>아동·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| 생활보장과          | -----통합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애인복지과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동청소년과<br>(신설) | 아동친화도시 조성,<br>아동·청소년지원,<br>아동보호·복지에 관한 사항 |
| 가족정책과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복지과         |   |
| 어르신복지과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족정책과          |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어르신복지과         |   |

#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·청소년 전담부서를 구축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,
  - 안 제4조(행정관리국)제1항에서 “교육청소년과” 를 “교육지원과” 로
  - 안 제4조제2항제5호 교육청소년과 분장사무 중 “아동친화도시 및 청소년 건전 육성” 사무를 신설되는 부서로 이관토록 함으로써
    - 교육지원과 업무를 교육사업 중심으로 내실있게 조정하였으며,
  - 안 제7조(생활복지국)제1항에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와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“아동청소년과” 를 신설하여,
    -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·청소년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정비하였음.
  - 이번 개정과 관련한 부서 및 팀별 총괄 조직개편 사항은 【표 1】 과 같음.

【표 1】 조직개편 내용

| 부서명<br>(명칭변경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 용   |  | 비 고   |
|---|---|--|---|
|   | 현 행   | 개 편  |   |
| 교육청소년과<br>(5개팀)<br>⇒<br><b>교육지원과</b><br>(4개팀) | 교육지원팀<br><del>아동청소년친화팀</del><br>평생교육팀<br>도서관운영팀<br>장학사업지원팀  | 교육지원팀<br>평생교육팀<br>도서관운영팀<br>장학사업지원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서 명칭변경</li> <li>팀개수 축소</li> </ul>               |
| 생활보장과<br>(8개팀)<br>⇒ <b>6개팀</b>                | 생활보장팀<br>자활주거팀<br>의료보장팀<br>통합관리 1팀<br>통합관리 2팀<br>통합관리 3팀<br><del>드림스타트팀</del><br><del>아동보호팀</del> | 생활보장팀<br>자활주거팀<br>의료보장팀<br>통합관리 1팀<br>통합관리 2팀<br>통합관리 3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팀개수 축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아동청소년과</b><br>(4개팀)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<del>아동청소년친화팀 (팀이관)</del><br><del>아동보호팀 (팀이관)</del><br><del>드림스타트팀 (팀이관)</del><br><b>아동돌봄팀 (팀신설)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서 신설</li> <li>팀이관(3)</li> <li>팀신설(1)</li> </ul> |

○ 최근 늘어나는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지원과 아동·청소년을 세분화하여 전담 부서와 팀을 신설 하는 것은,

-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,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,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·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중력 있는 행정조직 정비는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2018. 1. 1.자 행정조직 개편에서

- 생활복지국의 어르신청소년과가 어르신복지과로 부서 명칭 변경되면서 아동청소년친화팀(2개팀)이 행정관리국의 교육청소년과로 팀 이관(통합) 되었으나, 이번 조직개편에서 다시 생활복지국으로 업무이관은 효율적인 행정 조직 운영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수혜자 중심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임

**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**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8. 2. 20.>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6. 29., 2020. 3. 10.>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